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52
----------	-------

제출년월일 : 2020. 05.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마포구립 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 중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신설되어 그에 대한 수강료 감면기준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마포구립도서관 수강료 감면대상자(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감면비율 신설 (안제13조 및 별표)

4. 주요 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 : 2020. 2. 13. ~ 3. 4. (제출된 의견 없음)
-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해당없음
-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해당없음
-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 6)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0.3.24.)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등의 부과·감면·환급 기준 (제13조제3항 관련)

1. 시설사용료

가. 부과기준

구 분		기 준	금 액(원)	비 고
마포중앙 도서관	다목적강당	1회 3시간	450,000	· 부가가치세 포함
	세미나실	1회 3시간	330,000	
	갤러리	1일	300,000	
	소규모강의실·토론방	1회 1시간	10,000	
	집필실	1회 4시간	10,000	
	피아노	1회 3시간	15,000	
서강도서관	세미나실	1회 1시간	10,000	
1) 사용시간 초과 시 기준금액의 시간당 사용료를 초과시간에 따라 가산하고,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토요일 및 공휴일은 사용료의 30%를 가산한다. 3)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사전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를 받는다. 4) 냉·난방비는 무료로 한다.				

나. 감면기준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마포구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10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70%
마포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만9세~만24세)의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각급 학교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0%
마포구 내 「평생교육법」에서 정하는 평생교육기관에서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장애인·보훈단체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이 사용하는 경우	
마포구 내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자선공연 행사의 경우	
마포구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또는 마포구 내 사업자등록증 보유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0%
갤러리를 10일 이상 장기대관하는 경우	

※ 중복 할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1개 항목만 적용함

※ 할인은 기본대관료에 한함

2. 수강료

가. 부과기준

구 분		수강료	비 고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월 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 60,000원 이하	
외국어프로그램		월 100,000원 이하	
특기적성프로그램		월 125,000원 이하	
1) 운영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2)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한다.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중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은 어린이영어도서관에 한한다.			

나. 감면기준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50%	30%	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3. 수수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회원증 재발급	1회 1매	1,000원	신규발급 무료
복사(전자복사기) 및 인쇄(프린터)	1면당 흑백(컬러)	B5	30원(300원)
		A4	40원(300원)
		B4	50원(600원)
		A3	60원(600원)

4. 환급규정

구 분	환급기준	
· 도서관 귀책사유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인 경우	시설사용료	- 개시일 이전·이후 : 전액환급
	수강료	
· 이용자의 귀책 사유인 경우	시설사용료	- 개시일 7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 전액환급 - 개시일 3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75퍼센트 환급 - 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시 : 납부된 사용료의 50퍼센트 환급 - 개시일 당일 취소한 경우 : 미환급
	수강료	- 개시일 전일까지 : 전액 - 개시일부턴 · 총 강좌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총 강좌시간의 1/2 경과 이후 : 미환급
※ “개시일”이란 계약내용이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최초 이용일, 기간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기간이 시작되는 초일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1. 시설사용료</p> <p>가. ~ 나. (생 략)</p> <p>2. 수강료</p> <p>가. (생 략)</p> <p>나. 감면기준</p>	<p>1. (현행과 같음)</p> <p>가. ~ 나.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감면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감면대상</th> <th colspan="3">감면비율</th> </tr> <tr> <th>도서관 일반 프로그램</th> <th>특기적성 프로그램</th> <th>외국어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50%</td> </tr> <tr> <td>「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td> <td rowspan="2">70%</td> <td rowspan="2">70%</td> <td rowspan="2">50%</td> </tr> <tr> <td>「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td> </tr> <tr> <td>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td> <td rowspan="2">50%</td> <td rowspan="2">30%</td> <td rowspan="2">30%</td> </tr>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td> </tr> <tr> <td>「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td> <td rowspan="2">50%</td> <td rowspan="2">30%</td> <td rowspan="2">30%</td> </tr> <tr> <td>「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td> </tr> <tr> <td>「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 대상자</td> <td></td> <td></td> <td></td> </tr> <tr> <td colspan="4">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 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 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30%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 대상자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 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감면대상</th> <th colspan="3">감면비율</th> </tr> <tr> <th>도서관 일반 프로그램</th> <th>특기적성 프로그램</th> <th>외국어 프로그램</th> </tr> </thead> <tbody>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100%</td> <td rowspan="2">50%</td> </tr> <tr> <td>「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td> </tr> <tr> <td>「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td> <td rowspan="2">70%</td> <td rowspan="2">70%</td> <td rowspan="2">50%</td> </tr> <tr> <td>「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td> </tr> <tr> <td>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td> <td rowspan="2">50%</td> <td rowspan="2">30%</td> <td rowspan="2">30%</td> </tr> <tr> <td>「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td> </tr> <tr> <td>「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td> <td rowspan="2">50%</td> <td rowspan="2">30%</td> <td rowspan="2">30%</td> </tr> <tr> <td>「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td> </tr> <tr> <td>「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 대상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u>5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u></td> <td style="text-align: center;"><u>30%</u></td> </tr> <tr> <td colspan="4">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 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td> </tr> </tbody> </table>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 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30%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 대상자	<u>50%</u>	<u>30%</u>	<u>30%</u>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 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 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30%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 대상자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 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감면대상	감면비율																																																																						
	도서관 일반 프로그램	특기적성 프로그램	외국어 프로그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 료급여 수급자 본인 및 가족	100%	100%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가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적용대상자 본인	70%	70%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																																																																							
다자녀가정(다둥이행복카드 발급 대상 중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50%	30%	3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 층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50%	30%	30%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본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병역명문가 예 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 가 예우 대상자	<u>50%</u>	<u>30%</u>	<u>30%</u>																																																																				
1) 감면은 마포구 거주자에 한함 2) 특기적성 프로그램은 1명당 1강좌에 대해서만 감면 비율 적용 3) 도서관일반프로그램 및 외국어프로그램의 다자녀가정 혜택은 만5세 이 하의 막내자녀를 둔 가정에 한함																																																																							
<p>3. ~ 4. (생 략)</p>	<p>3. ~ 4. (현행과 같음)</p>																																																																						

서울특별시 마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조례안 제13조(사용료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우리 구에 등록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에 대한 수강료 감면 추계 결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함.
(※ 손실액 추계현황 참조)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마포중앙도서관 이영규
연 락 처	3153-5816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수강료 감면에 따른 손실액 추계 현황

1. 2020. 1월 기준 마포구 병역명문가 현황 : 총 25가문¹⁾
2. 수강료 부과기준에 따른 1년 수강료 감면 최대 예상액 : **94,770천원**
 - 외국어프로그램 : (100천원*30%) * 117명 * 12개월 = 42,120,000원
 - 특기적성프로그램 : (125천원*30%) * 117명 * 12개월 = 52,650,000원

※ 도서관 조례 [별표] 수강료 부과 기준

구 분		수강료	비 고
도서관일반 프로그램	독서문화프로그램	월 35,000원 이하	
	어린이영어프로그램	월 60,000원 이하	
외국어프로그램		월 100,000원 이하	
특기적성프로그램		월 125,000원 이하	

- * 2020년 현재 ‘독서문화프로그램’ 수강료 기준을 적용한 프로그램 미운영
-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는 병역 이행한 성인을 뜻하므로 ‘어린이영어프로그램’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

1) 병역명문가 대표자의 주소가 ‘마포구’로 등록된 가문의 수, 최소 25명 ~ 최대 117명